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94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시행 2021.1.1.)’을 반영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설정하고 그 구역 내(內)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물의 증·개축시 경관 변경 심의를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고층 건축물 디자인 경관특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관심의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을 추가함.(안 제6조)
-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함.(안 제10조)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함.(안 제19조)
-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을 추가함.(안 제20조)
- 경관 조례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1항 별표는 별표 1로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설정된 구역 내(內)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 경관 조례 제26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중 (제1항 별표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건축물 경관 특화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르도록 하였음.(안 제26조제2항)
- 경관 조례 제2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의거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증·개축할 경우 증·개축 연면적이 500㎡ 이내이면서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이내 증·개축 하는 경우 변경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했음(안 제26조제3항)
- 경관 조례 제26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건

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하고, 단서에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했음(안 제26조제4항)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반영
 - 입법예고 : 2020. 9. 19. ~ 2020. 10. 8.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붙임 1 >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와 같다”를 “별표 1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증·개축 연면적이 500㎡ 이내이면서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증·개축의 경우(단, 여러 동의 건축물인 경우 각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함)

② 제1항 별표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건축물 경관 특화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축디자인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디자인과장 조 계 천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팀장 강 영 철
자	담당자 성명·전화	강 영 철 (행정 2620)

[별표 1]

□ 경관심의 건축물(제26조 관련)

구 분		건 축 물 의 종 류
1. 경관지구	가. 시가지 경관지구 (대부도 제외)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	가. 대부도 연안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항금로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 시화호 연안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라. 다문화 마을	원곡동 일대의 다문화길,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포함) 대상 공공건축물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2)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대부도 연안은 경관관리 우수한 지역으로 펜션, 근린생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대부도 연안 경계 100m 기준'으로 적용한다. 4) 대부항금로는 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대지경계선 30m'까지 적용한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 20m'까지로 적용한다.

[별표 4]

□ 건축물 경관특화에 관한사항(제26조 관련)

구 분	검 토 항 목
기본방향	디자인 특화를 통한 우수한 건축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성
	개성있는 디자인을 통한 생태건축 갤러리 유도
	공공적 가치 증대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지붕 및 옥상	건축물 상층부 및 옥탑부는 각동별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특화하여 우수한 건축환경 조성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을 고려하여 옥탑부분은 랜드마크화하여 계획
	건축물 옥상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경관이 특색 있도록 계획
	자연경관과 인접하여 공동주택이 형성될 경우 중저층의 판상형은 경사지붕을 권장, 고층의 탑상형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 수립
	옥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물탱크 등 설비시설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과의 일체감 부여
형태 및 재료	건축물의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중층부, 고층부)로 구분, 특성에 따라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입면 계획
	돌출형 발코니, 입면 볼륨의 변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변화 있는 경관을 형성
	창문, 발코니의 형태와 색채는 벽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측벽은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배치 및 규모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거 유형 배치 권장
	공원, 하천, 도시진입 경관을 형성하는 도로 등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탑상형 배치 권장
	주변경관에 비해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나홀로 아파트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고층의 나홀로 공동주택 형성 시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제안 구역 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p>「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안산시 경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p> <p>안산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제안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물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u>제안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생략)</p> <p><u><신설></u></p> <p>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생략)</p> <p><u><신설></u></p>	<p>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u>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u></p>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제>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 별표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건축물 경관 특화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증·개축 면적

5.·6. (생략)

<신설>

이 500㎡ 이내이면서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증·개축의 경우(단, 여러 동의 건축물인 경우 각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함)

5.·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 경관심의 건축물(제26조 관련)

구 분		건축물의 종류
1.경관지구	대부도 경관지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대부도 외 경관지구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2.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 정 안

[별표 1]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제26조 관련)

구 분	건축물의 종류	
1.경관지구	가. 시가지 경관지구 (대부도 제외)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중점경관 관리구역	가.대부도연안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나.대부도금로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사회연안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라.다문화마을	원곡동 일대의 다문화길,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포함)대상 공공건축물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 포함)대상 건축물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그 밖에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 1)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기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 2)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 3) 대부도 연안은 경관관리 우수한 지역으로 펜션, 근린생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대부도 연안 경계 100m 기준'으로 적용한다.
- 4) 대부도금로는 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대지경계선 30m'까지 적용한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 20m'까지로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표 4]</p> <p>□ 건축물 경관특화에 관한사항(제26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검 토 항 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본방향</td> <td>디자인 특화를 통한 우수한 건축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성</td> </tr> <tr> <td>개성있는 디자인을 통한 생태건축 갤러리 유도</td> </tr> <tr> <td>공공적 가치 증대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지붕 및 옥상</td> <td>건축물 상층부 및 옥탑부는 각동별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특화하여 우수한 건축환경 조성</td> </tr> <tr> <td>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을 고려하여 옥탑부분은 랜드마크화하여 계획</td> </tr> <tr> <td>건축물 옥상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경관이 특색 있도록 계획</td> </tr> <tr> <td>자연경관과 인접하여 공동주택이 형성될 경우 중저층의 판상형은 경사지붕을 권장, 고층의 탑상형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 수립</td> </tr> <tr> <td>옥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물탱크 등 설비시설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과의 일체감 부여</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형태 및 재료</td> <td>건축물의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중층부, 고층부)로 구분, 특성에 따라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입면 계획</td> </tr> <tr> <td>돌출형 발코니, 입면 볼륨의 변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변화 있는 경관을 형성</td> </tr> <tr> <td>창문, 발코니의 형태와 색채는 벽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td> </tr> <tr> <td>측벽은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디자인</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배치 및 규모</td> <td>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거 유형 배치 권장</td> </tr> <tr> <td>공원, 하천, 도시진입 경관을 형성하는 도로 등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탑상형 배치 권장</td> </tr> <tr> <td>주변경관에 비해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나홀로 아파트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고층의 나홀로 공동주택 형성 시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td> </tr> </tbody> </table>	구 분	검 토 항 목	기본방향	디자인 특화를 통한 우수한 건축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성	개성있는 디자인을 통한 생태건축 갤러리 유도	공공적 가치 증대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지붕 및 옥상	건축물 상층부 및 옥탑부는 각동별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특화하여 우수한 건축환경 조성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을 고려하여 옥탑부분은 랜드마크화하여 계획	건축물 옥상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경관이 특색 있도록 계획	자연경관과 인접하여 공동주택이 형성될 경우 중저층의 판상형은 경사지붕을 권장, 고층의 탑상형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 수립	옥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물탱크 등 설비시설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과의 일체감 부여	형태 및 재료	건축물의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중층부, 고층부)로 구분, 특성에 따라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입면 계획	돌출형 발코니, 입면 볼륨의 변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변화 있는 경관을 형성	창문, 발코니의 형태와 색채는 벽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측벽은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배치 및 규모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거 유형 배치 권장	공원, 하천, 도시진입 경관을 형성하는 도로 등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탑상형 배치 권장	주변경관에 비해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나홀로 아파트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고층의 나홀로 공동주택 형성 시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구 분	검 토 항 목																					
기본방향	디자인 특화를 통한 우수한 건축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성																					
	개성있는 디자인을 통한 생태건축 갤러리 유도																					
	공공적 가치 증대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지붕 및 옥상	건축물 상층부 및 옥탑부는 각동별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특화하여 우수한 건축환경 조성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을 고려하여 옥탑부분은 랜드마크화하여 계획																					
	건축물 옥상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경관이 특색 있도록 계획																					
	자연경관과 인접하여 공동주택이 형성될 경우 중저층의 판상형은 경사지붕을 권장, 고층의 탑상형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 수립																					
	옥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물탱크 등 설비시설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과의 일체감 부여																					
형태 및 재료	건축물의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중층부, 고층부)로 구분, 특성에 따라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입면 계획																					
	돌출형 발코니, 입면 볼륨의 변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변화 있는 경관을 형성																					
	창문, 발코니의 형태와 색채는 벽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측벽은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배치 및 규모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거 유형 배치 권장																					
	공원, 하천, 도시진입 경관을 형성하는 도로 등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탑상형 배치 권장																					
	주변경관에 비해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나홀로 아파트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고층의 나홀로 공동주택 형성 시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요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안산시 경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없음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채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고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				
유효기간				
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 수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안산시 경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없음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494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7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경관심의 대상인 중점경관 관리구역 중 다문화마을 해당 구간에 중앙대로를 추가하여 심의 대상 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

주요골자

- 경관심의 대상인 중점경관 관리구역 중 다문화마을의 범위를 “원곡동 일대의 다문화길,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원곡동 일대의 중앙대로, 다문화길,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로 수정(안 별표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 경관심의 건축물(제26조 관련)

구 분		건 축 물 의 종 류
1. 경관 지구	가. 시가지 경관지구 (대부도 제외)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 관리구역	가. 대부도 연안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항금로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 시화호 연안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라. 다문화 마을	원곡동 일대의 중앙대로, 다문화길,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 (협의 포함) 대상 공공건축물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2)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대부도 연안은 경관관리 우수한 지역으로 펜션, 근린생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대부도 연안 경계 100m 기준'으로 적용한다. 4) 대부항금로는 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대지경계선 30m'까지 적용한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 20m'까지로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행	개정안	[별표 1]																																																																							
<p>[별표]</p> <p>□ 경관심의 건축물(제26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69 725 526 1144"> <thead> <tr> <th>구분</th> <th>건축물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경관지구</td> <td>경관지구</td> <td>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경관지구 외</td> <td>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2. 공공 건축물</td> <td>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농·농·문화,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td> <td>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td> </tr> <tr> <td>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td> <td>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3.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td> <td>가. 「건축물의 분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td> <td>가. 「건축물의 분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td> </tr> <tr> <td>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td> <td>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td> </tr> </tbody> </table> <p><small>□ 경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small></p>	구분	건축물의 종류	1. 경관지구	경관지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경관지구 외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2.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농·농·문화,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물의 분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가. 「건축물의 분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p>[별표 1]</p> <p>□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제26조 관련)</p> <p>□ 경관심의 건축물(제26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598 752 947 1700"> <thead> <tr> <th>구분</th> <th>건축물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경관지구</td> <td>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건축물</td> <td>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나. 대부도 경관지구</td> <td>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2. 중형경관관리구역</td> <td>가. 대부도 일원</td> <td>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나. 대부도 일원</td> <td>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다. 시화호 일원</td> <td>가. 시화호 일원</td> <td>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나. 시화호 일원</td> <td>원격능 안내의 다문화권, 부부리, 원문로, 원진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3. 공공 건축물</td> <td>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td> <td>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td> </tr> <tr> <td>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td> <td>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4.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td> <td>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td> <td>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td> </tr> <tr> <td>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td> <td>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td> </tr> </tbody> </table> <p><small>①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② 경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③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 ④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 ⑤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 ⑥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small></p>	구분	건축물의 종류	1. 경관지구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 중형경관관리구역	가.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 시화호 일원	가. 시화호 일원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시화호 일원	원격능 안내의 다문화권, 부부리, 원문로, 원진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p>[별표 1]</p> <p>□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제26조 관련)</p> <p>□ 경관심의 건축물(제26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019 763 1382 1760"> <thead> <tr> <th>구분</th> <th>건축물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경관지구</td> <td>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건축물</td> <td>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나. 대부도 경관지구</td> <td>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2. 중형경관관리구역</td> <td>가. 대부도 일원</td> <td>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나. 대부도 일원</td> <td>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다. 시화호 일원</td> <td>가. 시화호 일원</td> <td>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나. 시화호 일원</td> <td>원격능 안내의 중일대로, 다문화권, 부부리, 원문로, 원진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3. 공공 건축물</td> <td>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td> <td>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td> </tr> <tr> <td>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td> <td>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td> </tr> <tr> <td rowspan="2">4.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td> <td>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td> <td>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td> </tr> <tr> <td>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td> <td>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td> </tr> </tbody> </table> <p><small>①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② 경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③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 ④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 ⑤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 ⑥ 해당 연안은 경관지구 수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근방(수역)을 의미하며, 해당 연안 경계 100미터 이내로 적용한다.</small></p>	구분	건축물의 종류	1. 경관지구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 중형경관관리구역	가.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 시화호 일원	가. 시화호 일원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시화호 일원	원격능 안내의 중일대로, 다문화권, 부부리, 원문로, 원진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구분	건축물의 종류																																																																								
1. 경관지구	경관지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경관지구 외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2.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농·농·문화,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물의 분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가. 「건축물의 분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종류																																																																								
1. 경관지구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 중형경관관리구역	가.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 시화호 일원	가. 시화호 일원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시화호 일원	원격능 안내의 다문화권, 부부리, 원문로, 원진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구분	건축물의 종류																																																																								
1. 경관지구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 중형경관관리구역	가.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나. 대부도 일원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 시화호 일원	가. 시화호 일원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시화호 일원	원격능 안내의 중일대로, 다문화권, 부부리, 원문로, 원진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 건축물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별도) 대상 공공건축물(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공공청사(서청, 구청, 사인소,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및 복지시설(공민장, 관안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관리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심의가 필요한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일부시설 중 요아스텔 제5호의 숙박시설																																																																							